#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9305

발의연월일: 2025. 3. 24.

발 의 자 : 권향엽・남인순・이병진

정일영 · 정동영 · 박지원

김기표 · 용혜인 · 서미화

허성무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 요양 및 보상을 규정하고 있으나 업무 외의 사유로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런데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근로자의 질병휴가 사용을 법률로 규정하지 않고 있고, 취업규칙에 질병휴가 사용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경우도 전체 대기업 및 중소기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질병휴가의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용자로 하여금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4주 이상인 근로자가 업무 외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가를 신청하면 연간 60일의 범위에서 질병휴가를 주도록 하고, 질병휴가의 사용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질병휴가 사용을 법률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62조의2 신설 등).

#### 법률 제 호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62조의2에 따른 질병휴가

제6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62조의2(질병휴가) ①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4주 이상인 근로자가 부상 또는 질병(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은 제외한다)으로 휴가(이하 "질병휴가"라 한다)를 신청하면 연간 60일의 범위에서 질병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최초 3일은 유급으로 하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의 기간은 질병휴가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② 연간 7일 이상의 질병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는 의사의 진단서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증빙서류를 사용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사용자는 질병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질병휴가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09조제1항 중 "제56조"를 "제56조, 제62조의2제3항"으로 한다. 제116조제2항제2호 중 "제48조"를 "제48조, 제62조의2제1항"으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혅 했 개 정 아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4의2. 제62조의2에 따른 질병휴 가 5. (생략) 5.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62조의2(질병휴가) ①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4주 이상인 근로자가 부상 또는 질 병(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은 제외한다)으로 휴가(이하 "질병 휴가"라 한다)를 신청하면 연 간 60일의 범위에서 질병휴가 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최초 3일은 유급으로 하며, 「감염병 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률」 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 가의 기간은 질병휴가 기간에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 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u>제5 6조</u>,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 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생 략)

 제116조(과태료) ① (생 략)

포함하지 아니한다.

- ② 연간 7일 이상의 질병휴가 를 사용하는 근로자는 의사의 진단서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증빙서류를 사용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사용자는 질병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질병휴가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_\_\_\_\_

\_\_\_\_\_

-----.

② (현행과 같음)

제116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생략)
- 2. 제14조, 제39조, 제41조, 제4 2조, <u>제48조</u>, 제66조, 제74조 제7항·제9항, 제76조의3제2 항·제4항·제5항·제7항, 제 91조, 제93조, 제98조제2항 및 제99조를 위반한 자
- 3. 4. (생략)
- ③ (생략)

음)
②
1. (현행과 같음)
2
<u>제48조,</u> 제62조의2제1
<u>ठॅ</u> }
3.・4.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